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7.

발 의 자 : 김문수 · 조계원 · 김우영
김남근 · 박홍배 · 민형배
이수진 · 김현정 · 이훈기
문정복 · 김 윤 · 이재관
이병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일체 금지하고 있으므로, 교원은 자신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.

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,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, 국제노동기구 등은 우리나라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. 또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원 개인의 기본권을 균형있게 모색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유치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와 교원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구현하려는 것임 (안 제23조, 제47조 및 제49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문수위원이 대표발의한 「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069호), 「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07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지방공무원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”을 “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인 경우는 제외한다.

제47조제1항 단서 중 “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
2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
3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

제49조제1항 전단 중 “제60조까지”를 “제60조(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

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중에서 「교육
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 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2
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이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에 입
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까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검직의 제한)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. <단서 <u>신설</u> >	제23조(검직의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</u> <u>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「교육</u> <u>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</u> <u>따른 교원인 경우는 제외한다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「지방 공무원법」 제2조에 규정된 <u>지방공무원 및 「사립학교</u> <u>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</u> <u>립학교의 교원</u>	2. ----- ----- ----- <u>지방공무원</u>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47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「공직선거법」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(제49조제1항에 서 준용되는 「공직선거법」 제 35조제4항의 보궐선거등의 경우 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	제47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다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(생략)

제49조(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

①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공직선거법」 제3조부터 제8조까지,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, 제8조의6,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1조,

--. -----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-----.

1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

2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

3. 「사립학교법」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휴직하는 경우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「공직선거법」의 준용)

① -----

제12조, 제14조, 제15조, 제17조
부터 제19조까지, 제30조부터
제46조까지, 제48조부터 제50조
까지, 제52조, 제54조부터 제57
조까지,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,
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,
제61조, 제62조부터 제74조까지,
제79조부터 제82조까지, 제82조
의2,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7
까지, 제85조, 제86조(제2항제2
호 단서·제3호 및 제6항 단서
는 제외한다), 제87조부터 제108
조까지, 제108조의2, 제109조부
터 제122조까지, 제122조의2, 제
135조(제1항 단서는 제외한다),
제135조의2, 제146조, 제146조의
2,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, 제
149조의2, 제151조부터 제159조
까지, 제161조부터 제166조까지,
제166조의2, 제167조부터 제186
조까지, 제191조부터 제206조까
지, 제211조부터 제217조까지,
제219조부터 제262조까지, 제26
2조의2, 제262조의3, 제263조부
터 제265조까지, 제265조의2, 제
266조부터 제270조까지, 제270

-----제60조(「공
직선거법」 제60조제1항제4호
본문에 따른 국가공무원 및 지
방공무원 중에서 「교육공무원
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
교원 또는 「사립학교법」 제2
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이
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선거
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제외한
다)까지-----

조의2, 제271조, 제271조의2, 제272조, 제272조의2, 제272조의3, 제273조부터 제277조까지, 제277조의2, 제278조, 제279조 중 시·도지사 및 시·도지사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무소속후보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